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518528 판결 [채권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유정석, 김상만

피고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이석중

변론 종결2018. 8. 23.

판결 선고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선박 건조업, 선박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2009. 1. 29. B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C의 채권매수청구 및 관련소송의 경과 등

1) C은 2013. 7. 23. 제20차 협의회 안건 중 제2호 의안인 B에 대한 1,300억 원의 신규자금지원 등의 건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2013. 7. 24. 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C의 위 동의조건 수용 없이 제2호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에 2013. 7. 29.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3. 12. 31. 폐지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찬성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들(당시 협의회의 구성원이었던 D 유한회사 역시 반대채권자로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에게 매수요청금액을 42,927,000,000원으로 하여 C의 B에 대한 채권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2) C의 위 채권매수청구 당시 B의 담보제공자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E공장	E조선소	전남 F 토지위 지상 건물소재 구축물, 기계장비, 중장비	123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공동담보1) 공동담보권자 : C, 원고, 피고들, D 유한회사, 이하 같다.
E조선소 산업단지	전남 G 토지H 토지	1	공동담보	
I	전남 I 토지위 지상 건물	1	공동담보	
목포아파트	전남 목포시 K아파트 L호	1	공동담보	
내업1공장	전남 영암군 M 토지위 지상 건물소재 구축물, 기계장비 및 중장비	1	한국산업은행	
내업2공장	전남 영암군 N 토지위 지상 건물소재 구축물	12345	CCCO 주식회사공동담보	

E공장	E조선소	전남 F 토지위 지상 건물소재 구축물, 기계장비, 중장비	123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공동담보1) 공동담보권자 : C, 원고, 피고들, D 유한회사, 이하 같다.
	기계장치			
전세권	서울 용산구 P 외 3필지 Q건물 R호 전세권	1	공동담보	
양도담보권	S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건설 중인 자산보증금		공동담보	

3)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T회계법인에게 C의 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보고를 의뢰하였고, T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이하 '관련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에 따라 2014. 1. 24. C에게 채권의 매입가격을 16,734,000,000원[= 담보채권의 청산가치 16,734,000,000원(= 내업2공장에 설정된 C의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담보채권의 청산가치 13,000,000,000원 + B 소유 부동산, 전세권 및 양도담보제공자산에 대한 협의회 공동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담보채권의 청산가치 3,734,000,000원) + 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 0원(= 무담보채권 26,534,000,000원 × 회수율 0%)]으로 통보하였다.

4) 이에 C은 2014. 5. 9.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내업2공장에 설정된 C의 3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15,800,000,000원(이하 '관련사건 담보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청산가치 배분액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C의 청산가치 배분액은 33,258,772,000원이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4773).

5) 위 법원은 관련사건 담보채권은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 C의 출자전환으로 상계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소송에서의 감정인 U의 감정결과(이하 '관련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라 C에게 배분될 담보자산의 청산가치가 18,738,572,000원임을 근거로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에 대하여 C, 원고,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624), 2017. 1. 20.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C과 원고, 피고들 사이의

채권매매대금에 관한 위 1심 및 항소심 소송을 통틀어 '관련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채권매수청구 등

- 1) 원고는 2013. 12. 2. 제21차 협의회 안건[제1호 의안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의 건', 제2호 의안 '재무구조 개선의 건' 및 제3호 의안 '수주심의위원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2013. 12. 10. 피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21차 협의회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1.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찬성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매수요청금액을 12,457,694,500원[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한 주식 2,372,500주(23,725,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 2)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T회계법인에게 원고의 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보고를 의뢰하였고, T회계법인의 2014. 2. 18.자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는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에 대한 매수가액을 2,667,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3)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5. 23. 원고에게 채권매입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5. 30.까지 통지해달라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대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

○ 매입가격 : 2,667,000,000원

- 채권매수청구일(2013. 12. 11.) 현재 회사재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산정(T회계법인 실사보고서 기준)하고 산정된 청산가치를 채권자별로 배분*

* 배분순위 : ① 선순위채권(임금채권 등), ② 담보채권, ③ 무담보채권, ④ 출자전환주식

- 제20차 협의회에서 채권매수를 청구한 C이 채권 매입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 제기 예정임을 통보해왔으므로, C과의 소송결과를 가정하여 CASE별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승소하는 경우로 채권을 매입

소송결과 채권금융기관이 승소하는 경우	2,667,000,000원
소송결과 채권금융기관이 패소하는 경우	2,645,000,000원

- C과의 소송결과 채권금융기관이 패소할 경우, 반대채권자(원고)는 채권매수자에게 CASE간 차액 22,000,000원 반환

○ 지급 이자율

- 채권매수청구일 이전 : 매수청구일 현재 이자율 적용(연체이자 면제)

- 채권매수청구일 이후 : 매입가격에 대하여 연 6% 이자율 적용(연체이자 면제)

4) 원고와 피고들은 구 기촉법 제20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채무자인 B이 원고의 채권(출자전환 주식 포함)을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5. B과 사이에 원고의 채권을 B에게 양도대금을 2,796,788,020원(=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채권매수청구일인 2013. 12. 11.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체결일인 2014. 6. 2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기존 채권의 미지급 이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한 주식 2,372,500주²⁾을 B에게 양도대금을 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으로부터 위 채권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관련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구 기촉법 제20조는 다음과 같다.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3. 그 밖에 해당 채권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찬성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찬성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협의회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제3항 후단에 따라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들은 관련소송에서의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판단 결과에 따라 원고의 채권매매대금을 변경하기로 유보하고, 잠정적으로 관련사건 검토보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를 산정한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2,667,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관련사건 감정결과 위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관련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채권매매대금은 4,042,429,000원(= 관련사건 감정결과 원고에게 배분된

E공장, 내업 1·2공장, 전세권의 청산가치 3,283,429,000원 + 이 사건 검토보고서상 원고에게 배분된 양도담보자산의 청산가치 759,000,000원)이다.

2) 원고의 2013. 12. 11.자 채권매수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다만 위 계약의 이행방법으로써 B이 원고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채권의 매수인은 여전히 피고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채권매매대금 4,042,429,000원에서 기존에 지급한 2,667,000,000원을 공제한 1,375,4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채권매매대금을 확정적으로 2,667,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매매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된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공정·정당성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착오가 있었고,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금액이 과소 산정된 것임을 당사자가 알았다면 채권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산정된 4,042,429,000원으로 정하였을 것이므로, 공통된 착오에 기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항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관련사건 감정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B의 담보제공자산 중 전세권에 대한 청산가치 842,117,000원을 누락하고, E공장 및 내업 1·2공장의 회수비용 저감율 20%를 차감한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원고가 정당하게 산정된 채권매매대금에 따른 차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2013. 12. 11.자 채권매수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통보서를 통해 제시한 채권매매대금과 조건(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매수청구일 이후 연 6%의 이자율 적용)에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로 채권매매대금과 조건이 확정되었고(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 채무자 V이 원고의 채권 매수를 희망하고 원고가 이에 합의함에 따라 B이 2014. 6. 25. 원고로부터 채권을 매수하고 확정된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채권의 매수인은 B이므로 매수인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제시한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에

대하여 스스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뿐,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공정·정당성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은 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협의로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매매대금의 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매수인의 확정

- 1) 원고는 피고들이 채권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채권의 매수인은 B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매매대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채권의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한다.
- 2)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협의회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벗어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 부담 등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3. 12. 11.자 채권매수청구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 3)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기촉법 제2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채권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그 법적 성격은 본래의 채권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인수인(해당 채권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 이하 같다)의 3면 합의 또는 찬성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와 반대채권자의 동의 또는 승낙에 따른 '계약인수'에 해당할 것이다], ② 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과 조건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기촉법 제20조의 문언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인정취지와 그

성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채권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변경하여 제3자로 하여금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변경 뿐 아니라 매수가액, 매수조건에 관하여도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이를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합의로 매수인이 제3자로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찬성채권자가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을 B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양도대금으로 2,796,788,020원(= 아래 제3의 나. 1)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확정'된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채권매수청구일인 2013. 12. 11.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체결일인 2014. 6. 2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기존 채권의 미지급 이자)을 'B'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B'으로 변경되어 B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써 B이 대상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라거나, 매수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여전히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채권매수인으로서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권매매대금의 확정 여부 등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의 채권양수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수인이 피고들이라거나, 매수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여전히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매매대금 변경유보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3. 12. 11.자 채권매수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채권매매대금이 2,667,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관련소송에서의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판단 결과에 따라 원고의 채권매매대금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들은 2014. 5. 15. 원고에게 제시할 채권매입가격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24차 협의회 안건으로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채권매입가격을 2,667,000,000원으로 결정하되, 관련소송에서 관련사건 담보채권에 관하여도 청산가치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매수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C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채권매매대금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2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는 것'을 제안하여 이를 결의하였을 뿐, 그 밖에 관련소송에서의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판단 결과에 따라 원고의 채권매매대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통보서에도 위 가)항의 결의내용과 동일한 채권매입가격 및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뿐, 관련소송에서의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판단 결과에 따라 채권매입가격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통보서에는 '피고들이 제시한 채권매입가격 및 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5. 30.까지 통지하라'는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이 제시한 위 채권매매대금 및 조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관련소송에서의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판단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유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통보서를 통해 피고들이 제시한 채권매입가격 및 조건대로 V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채권양도대금이 2,796,788,020원(이자 포함), 주식양도대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채권매매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정에 쌍방의 착오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은 채권매수가액 및 조건은 일차적으로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결정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이 채권매매대금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청산가치 산정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청산가치 평가 오류 등으로 채권매매대금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따라 산정된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의 공정·정당성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매매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금액이 과소 산정된 것임을 알았다면 채권매매대금을 관련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4,042,429,000원으로 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채권매매대금 차액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기촉법 제20조 제3항이 채권의 매수가액은 일차적으로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관련소송에서의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판단 결과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변경하기로 유보하였다거나 채권매매대금의 결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통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후 관련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배분액이 원고와 피고들의 협의로 결정된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차액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약 관련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담보제공자산 청산가치 배분액이 위 채권매매대금 2,667,000,000원보다

작았다면 그 차액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종택

판사김용신

판사서지혜

1) 공동담보권자 : C, 원고, 피고들, D 유한회사, 이하 같다.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23,725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372,500주'의 오기로 보인다.